

대학 안전 관리 계획



2025. 2.

동의대학교

목 차

I. 대학안전관리계획 개요	1
1. 목표 및 기본방향	1
2.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	3
II. 위험요인별 예방활동 및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5
1. 재난	5
① 자연재난	5
② 사회재난	11
2. 안전사고	13
① 대학 안전사고	13
② 교육시설 안전사고	18
③ 연구실사고	20
3. 감염병 확산	22
① 감염병 예방 · 위기대응	22
4. 범죄	24
① 일반범죄	24
② 성범죄	26
5.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29
① 산업재해	29
② 중대재해	34
6. 기타	37
① 비상사태(전시, 침투 · 도발 등)	37

목 차

III. 안전사고 피해자 보상 및 지원	39
IV. 안전인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	42
V. 각종 위험 예방을 위한 교내·외 협력체계 구축	51
VI.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4
※ [붙임1] 위험요인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 현황(총괄)	55
[붙임2] 위험요인별 피해 현황(총괄)	56
[붙임3] 위험요인별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총괄)	57

《 관련 매뉴얼 및 지침 (별도첨부) 》

1. 교육시설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교육부, 2025)
 2. 우편물테러 식별 및 대응요령(대테러센터)
 3.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대응 매뉴얼(교육부, 2022)
 4. 다중이용시설 테러예방활동 가이드라인(대테러센터)
 5. 차량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대테러센터)
 6. 대학생 집단연수 운영 안전 확보 매뉴얼(교육부, 2025)
 7. 대학생현장실습학기제운영규정 매뉴얼(교육부, 2021)
 8. 교육시설안전 인증 신청가이드(교육부, 2022)
 9.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실무편람(교육부, 2022)
 10. 연구실 사고 비상대응매뉴얼(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11.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교육부, 2021)
 12. 제4차('22~'26)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법무부, 2021)
 13. 2023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지침)(여성가족부, 2023)
 14.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교육부, 2020)
 15. 산업재해 예방 관련 주요사항 안내(교육부, 2022)
 16. 2023년 중대재해 예방 추진 계획(교육부, 2023)
 17. 비상시 국민행동요령(행정안전부)
- ※ (탐재) 학교안전지원시스템(schoolsafe24.or.kr) ⇒ 커뮤니티 ⇒ 교육부정책

대학안전관리계획 개요

고등교육법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

비전

모두를 위한 안전한 대학생활 구현

목표

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문화 확산

추진과제

1

위험에 대한 예방활동 및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 위험별 대응매뉴얼과 안전조치
- 위험별 피해현황과 예방 및 대응 조치 계획

2

안전사고 피해자 보상 및 지원

- 대학안전사고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공제) 가입
- 연구실사고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공제) 가입

3

안전인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

- 법령에 규정된 안전교육의 충실한 이수를 통한 안전문화 확산
- 정기적인 재난대비훈련

4

각종 위험 예방을 위한 교내·외 협력체계 구축

- 대학 캠퍼스 지원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

□ 목적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 방침 설정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이행으로 재난예방을 위한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업무처리 절차마련과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 조속한 복구 등 수습능력 제고
- 재난 및 안전관리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 등 관련 예산 편성과 전담 조직 구성·운영

<위험요인별 관련 주요 법률>

구 분	주요 법률
1. 재난	▪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2. 안전사고	▪ 「고등교육법」,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3. 감염병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범죄	▪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5. 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6. 비상사태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 방침

- 대학 안전보건 경영 방침 설정을 최우선 의무 이행사항으로 규정
- 대학 소속 구성원뿐만이 아니라 대학 사업장 종사자를 보호 대상으로 고려하여 이사장 또는 총장의 안전보건 경영 리더십 강조
- 재난사고, 안전사고, 산업재해는 총괄부서에서 중점관리
- 사고 발생 시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위기관리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 대학 규모와 특성을 고려한 재난·안전 관련 총괄 업무는 대학별 법정 총괄 재난안전부서(또는 경영책임자 직속 대학 전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인원 확보 노력
 - 재난·안전 분야별 세부 구체적인 업무추진은 대학별 업무분장 부서에서 지정 주관
 - 재난안전 총괄부서는 대학 주요 관리 업무의 대응 절차 및 종합적인 예방대책 수립·시행
- 체험 위주의 교육훈련을 통한 위기대응 능력 강화로 유사시 신속 보고체계 이용 및 유관기관의 비상 연락망 활용

□ 수립 절차

- **(계획수립·시행)**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시행
- **(계획게시·제출)** 학교의 장은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공시 항목관리기관'에 제출*
 - * 대학안전관리계획은 대학정보공시 항목으로 '항목관리기관(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제출

2.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

① 학교 현황

□ 일반현황

학교명	동의대학교	설립 구분	사립
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엄광로 176		
전화	051-890-1089	FAX	0502-600-9198 홈페이지 www.deu.ac.kr
총장	한수환	총괄안전관리 책임자(관)	최민재 (직책: 관리처장)

□ 교직원 및 학생 현황

2023. 04. 대학정보공시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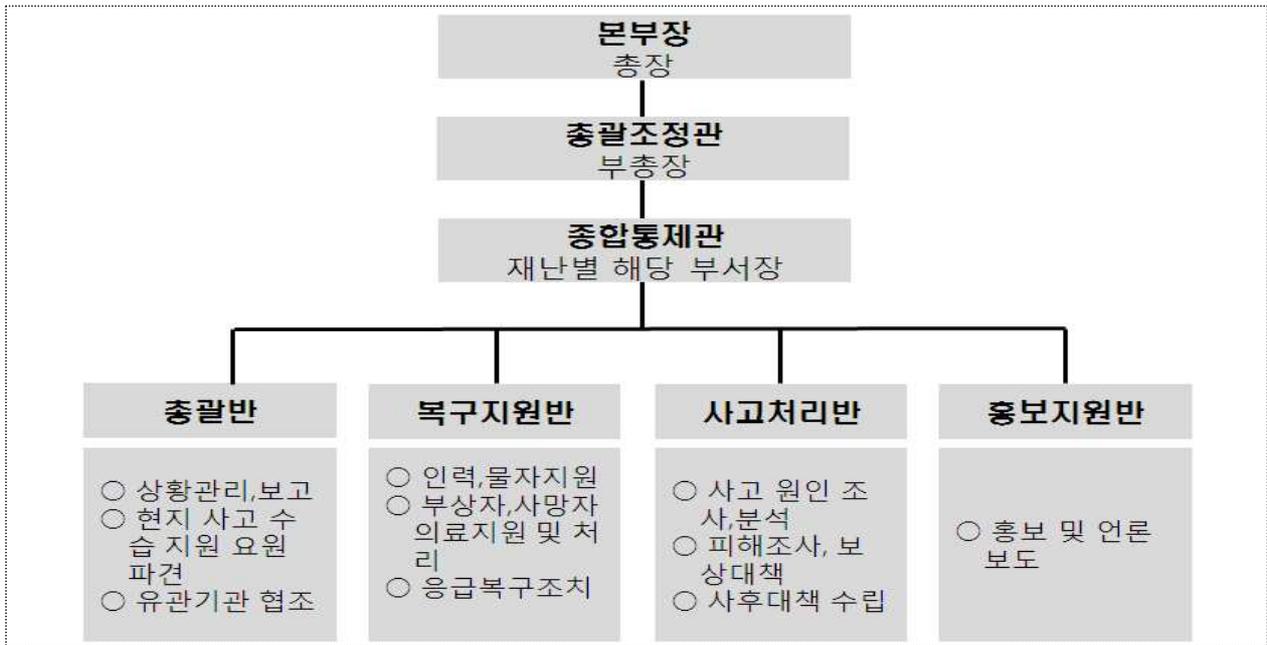
학생 (명)	학부생	대학원		합계	비고
		석사	박사		
	13,567	374	219	14,160	

교직원 (명)	교직원	전임교원	현업업무직원	학생보호인력	기타	합계
	249	548	30	-	-	

□ 학교 위치 및 비상대피도



2 조직체계 현황



□ 담당부서 현황

구분	위험유형	주관부서	협조·지원부서
총괄	대학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안전관리팀	관계 부서
1. 재난	자연재난	안전관리팀	시설관리팀
	사회재난	안전관리팀	시설관리팀
2. 안전사고	대학안전사고	안전관리팀	학생지원팀
	연구실 사고	안전관리팀	
	교육시설안전	시설관리팀	안전관리팀
3. 감염병	코로나 19	보건진료소	
4. 범죄	성범죄	인권센터	교무팀, 총무인사팀
	일반범죄	총무인사팀	학생지원팀
5.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팀	시설관리팀 복지관리팀
	중대재해처벌법	법인	
6. 기타	비상사태	총무인사팀	안전관리팀

□ 비상 연락망

부서명	직책	성명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총장실	총장	한수환	051-890-1002	010-9486-0859
부총장실	부총장	전경란	051-890-1004	010-9016-3962
교무처	처장	전경란	051-890-1010	010-9016-3962
학생지원처	처장	이철균	051-890-1040	010-8507-1670
기획처	처장	서진석	051-890-1110	010-9896-0713
입학처	처장	김삼열	051-890-1015	010-7436-3033
사무처	처장	남수호	051-890-1070	010-8780-2192
관리처	처장	최민재	051-890-1080	010-4830-4362
대학(학과/부)	학장	최연주	051-890-1200	010-5512-1740
일반대학원	대학원장	강재철	051-890-1170	010-4877-3202

1. 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자연재난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안전 관리팀	팀장	박병준	051-890-1087, pbjun@deu.ac.kr	주 관부서
팀원	안전 관리팀		강진우	051-890-1088, 81273@deu.ac.kr	
팀장	시설 관리팀	팀장	김종현	051-890-3391, kjh75@deu.ac.kr	협 조부서
팀원	시설 관리팀		류동훈	051-890-3394, rdh0322@deu.ac.kr	

□ 재난유형별 위험요인

- **(태풍)** 열대저기압 중심부의 최대풍속이 17m/s 이상으로 발달하여 태풍으로 명명된 것
 - 태풍이 발생되면 풍랑, 해일, 호우, 강풍으로 인하여 홍수, 산사태, 대규모 정전 등으로 인한 대학 시설물 및 학생 피해, 학생수업 결손 등의 인적·물적 피해 발생
- **(호우)** 일반적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것을 지칭
 - 국지성 집중호우와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산사태, 대학 시설물 붕괴·매몰 위험 및 운동장, 강의실 침수 등의 피해 발생
- **(대설)** 일정 시간에 강설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
 - 도심 내 주요 간선도로 및 시 외곽 도로의 통행이 불가하고 고립지역이 발생함에 따라 학생들이 등교에 차질을 빚으며 학생수업 결손 초래
- **(지진)** 지구내부에서 장시간 축적된 에너지가 순간 방출되면서 그 에너지의 일부가 지진파의 형태로 사방으로 전파되어 지표면에 지반이 흔들리는 자연현상
 - 지진 발생으로 인명 피해, 전력공급의 차질과 방송통신 시설에 피해 발생 및 라이프라인(life-line) 손상에 따른 수도물 및 가스공급 중단

□ 피해현황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평균
발생건수	9	7	4	1	1	4.4
재산피해(백만원)	349	362	6	1	15	146.6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부상	0	0	0	0	0
	계	0	0	0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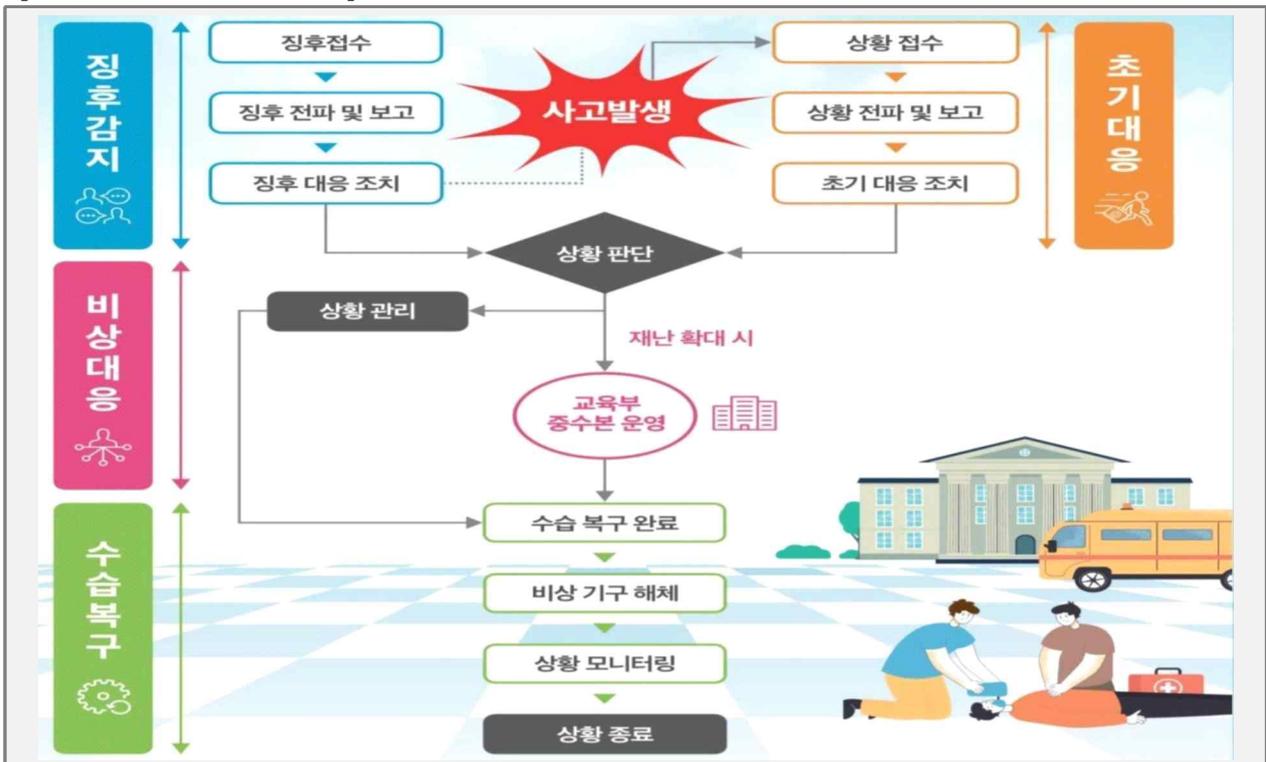
□ 원인분석

- 태풍 및 집중호우 등의 기상이변과 주요원인으로 연도별 피해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추세로, 기상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재해취약시설 사전예방 관리·조치 강화 필요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예방·대비) 학생 및 교직원 재난안전교육을 통한 재난 대응역량 강화
- (대응·조치) 재난 관련 신속한 상황전파 및 보고체계 확립, 안전한 학사 운영을 위한 긴급대책 및 휴업 등 학사 운영조정 안내
- (수습·복구) 학사 운영 결손을 최소화하여 학생의 수업권 확보, 시설·심리·학업 지원 관련 등 다양한 분야의 복구계획 시행

[재난대응·복구 체계·절차]



《 재난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①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

○ 예방교육

- 자연재난 대응 현장조치 매뉴얼 및 지침에 따른 재해취약시설별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통한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의식 고취
- 학생, 교직원 대상으로 자연재난 사고 예방 관련 교육 수행

< 예방교육 >

◎ 대학 캠퍼스 구성원(교직원, 학생 포함) 교육실시(온라인교육)

- (실시) 여름철, 겨울철 각 1회 실시
- (홍보) 학기 초 각 대학(학부, 학과) 학생회를 통한 정기안전교육 홍보 실시
- (평가) 교육 후 평가·시험 실시(온라인교육) 및 우수학부(학과) 포상 실시 등

○ 홍보활동

- 자연재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캠퍼스 내 재난유형별 예방 활동 동아리 운영, 포스터 공모전 등 홍보 활동

○ 재난대응훈련

-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재난대응훈련 실시
- 관계 부처 및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한 대학 구성원 대상의 정기적인 대피훈련 실시

②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 재난사고 대비·대응 체계(상황 관리체계) 구축·운영을 통한 단계별 재난 상황 판단(관심-주의-경계-심각) 및 재난단계별 보고·전파
- 재난 발생 시 단계별 담당 부서 및 실무자(정·부) 지정 관리

○ 재난단계별 매뉴얼 운용·대응

- **1단계** 관심, 주의단계

- 캠퍼스 내부 담당부서 상황모니터 및 재난 상황별 매뉴얼에 따른 대응
예) 지역적인 소규모의 화재, 건물 내 하수구 막힘 등
- 비상연락망 점검, 당직실, 담당부서 순찰 등 수행

- **2단계** 경계단계

- 캠퍼스 내부 담당부서 비상근무 체제 돌입
예) 건물구조물 손상사고, 심각한 풍수해, 장시간 단수, 주요 화재사고 등
- 상황모니터 및 재난 상황별 매뉴얼에 의거하여 대응
- 취약 및 위험 요소에 대한 대응 조치
- 부서별 협의(긴급 대피, 홍보 등)
- 교내 재난관리담당부서와 연락망 유지
-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 기관 협조 요청
- 재해 상황의 신속한 파악 및 대처

- **3단계** 심각단계

- 상황모니터 및 재난 상황별 매뉴얼에 의거하여 대응
- 재난관리본부 구성 및 대학합동상황실 운영
- 필요 시 재난관리본부 내 조직을 활용하여 업무지원
- 교육부 및 시 재난대책본부, 유관기관 협의

○ 재난상황보고·전파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성·운영

- 재난사고 보고체계 일원화 및 신속 보고·전파 체계 가동

- 교육부 안전대표 메일(moe119@moe.go.kr)을 통해 안전사고 발생시, 24시간 일관성 있는 보고체계 유지
- 교육부 안전대표 메일로 보고 후 유선연락
- 교육부 상황보고 및 기초자치단체 (시·군·구)에도 재난상황 통보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0조 - 재난상황 보고

- 중대 재난발생 시 교직원, 학생, 방문객 등에게 사고 상황 및 대피로 등을 전파
- 대학교 캠퍼스 내·외 안전관리 지원을 위해 구축된 재난안전관리 주관·유관기관과의 상호 협력 네트워크 활용 및 기관별 보유 자원(캠퍼스 시설 등) 공유 및 관련 내용 제공

③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피해조사

- 피해상황 조사 및 조사표 작성
- 재난피해 조사서 대장 작성
- 피해복구계획(안)과 인적·물적 피해 및 복구내역 조사
※ 피해조사결과를 교육부에 제출 (피해신고)

○ 피해 복구 우선순위 설정

- 피해 조사표 및 조사서 대장을 통한 피해 복구 우선순위 설정
- 피해복구계획(안)에 포함시켜 복구계획 수행에 반영

○ 사상자 대책

- 부상자 치료대책

- 의료반의 편성·운영
- 보건소, 보건지소 등 비상대기조 편성·운영
- 경상자는 원거리의 병·의원으로 후송
- 중상자는 최대한 가까운 거리의 종합 병원급으로 후송
- 보상의무자의 치료비 부담능력 및 보험조치 가능여부 확인 조치

- 사망자 대책

- 사망진단을 위한 병원 후송
- 사망자 신원 파악 후 유가족에게 즉각 연락
- 진단 후 보상 내용 결정(장례비, 유족배상 등)
- 보상금 지급·정산

- 구호활동

- 교통이 편리한 곳에 구호센터 설치·운영
- 상황에 따라 군부대 또는 시·군 의료구호반 파견 요청
- 의료활동 외에 상담 등 대피소 순회진료 등 구호활동 실시
- 피해지역 보건소장이 신속한 구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난 보건 대책 현지 본부를 설치, 체계적인 구호활동 추진

○ 현장복구

- 재난복구는 자력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지역주민 및 민·관·군의 협조로 복구
- 대학 구성원 및 외부인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피해재발이 우려되거나 개량 계획이 있는 구조물은 예산 허용범위 내 개량복구**

* (원상복구) 재난발생으로 기존 시설이 파손되어 기존 시설과 유사하게 복구

** (개량복구) 재난발생으로 기존 시설 파손 시 재발 방지를 위해 시설의 기능을 크게 개선하여 복구

○ 재난 모니터링 및 평가

- 대학 내 발생한 실험·실습실 사고를 통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을 제거 및 예방활동에 활용
- 중대 안전 사고의 전 과정에 대한 실행 측면과 조직 복원성 수준 측면 모두에서 개선사항 파악
- 도출된 개선사항은 '대학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여 보완·추진

◎ **모니터링 주요 결정사항**

- 모니터링 대상 및 측정방법
- 재난(사고)에 대한 모니터링, 피해현황 측정, 원인 분석 및 평가방안 모색
- 정기적인 모니터링 시기 결정
- 사전 재난(사고)요인을 사고 발생 전에 식별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등
- 상기 활동에 대한 문서화 작업
- 지속적인 수정 및 보완

◎ **모니터링 주요 착안사항**

- 각 대학의 지리적·환경적 요인 고려 및 최근 재난(사고)현황 사전 중점 분석
- 각 대학의 재난(사고)관리 정책의 적절성·시의성 및 준수 여부
- 재난(사고) 발생 후, 재난(사고)안전관리체계의 적절성 여부 등

◎ **모니터링 점검 활동을 통한 개선·보완 필요사항은 모든 재난(사고)발생 매뉴얼에 반영**

◎ **재발방지를 위해 부적합사항의 원인 검토·제거, 유사 부적합사항 규명**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3	2024	2025	합계	
교내 각 건물 방수공사	98	107	120	325	
교내 각 건물 보수공사	538	2,212	2,000	4,750	
조경시설물 보수공사	340	115	340	795	
계	976	2,434	2,460	5,870	

2 사회재난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안전관리팀	팀장	박병준	051-890-1087, pbjun@deu.ac.kr	주관부서
팀원	안전관리팀		강진우	051-890-1088, 81273@deu.ac.kr	
팀장	시설관리팀	팀장	김종현	051-890-3391, kjh75@deu.ac.kr	협조부서
팀원	시설관리팀		류동훈	051-890-3394, rdh0322@deu.ac.kr	

□ 재난유형별 위험요인

- (화재·폭발)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에 의해 발생하는 연소 현상으로서 소화 시설 등을 사용하여 소화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화학적인 폭발현상
 - 방화, 실화, 테러 등에 의한 (대형)화재 및 자연발화, 천재지변에 의한 발화, 기타 폭발, 관리부실 등 부주의에 의한 (대형)화재로 인한 대인·대물 피해발생
- (건물붕괴) 학생, 교직원이 이용하는 시설물(체육관, 강의동, 기숙사 등) 등의 붕괴나 파괴 등으로 인한 사고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유발하는 재난
 - 구조적 결함, 부실시공, 노후화, 관리부실 등에 의한 건축물 붕괴 발생 및 건설 공사 현장에서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붕괴로 인한 대규모 인적사고 초래
- (미세먼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먼지) 중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 미세먼지)
 - 사업장, 발전소, 자동차 등에 의한 초미세먼지 생성과 대기 정체 및 외기 유입에 따른 고농도 초미세먼지 상황 발생으로 학생건강 위협 및 수업결손 초래

□ 피해현황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평균
발생건수	1	2	2	0	0	1
재산피해(백만원)	0	0	48	0	0	9.6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부상	0	0	0	0	0
	계	0	0	0	0	0

□ 원인분석

- 부산진소방서 및 교내 사고 조사단 합동조사 결과
 - 건조한 날씨와 강풍의 영향으로 화재의 횡수 및 피해의 정도가 점차 증대되는 추세로 화기, 전열기구 사용·취급 시 안전교육과 소방시설 설치·유지관리 강화 필요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화재·폭발)** 불법·위험 전열기구 이용실태 점검, 소화기·소화전 등 매년 소방기구·시설 설치·작동 상태 점검·관리, 화재경보 비상벨, 대피로 등 피난시설 이용·행동요령 숙지
- **(건물붕괴)** 일상·정기점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재난발생에 대비한 보고체계 구축 및 유관기관 합동조사 체계 확립
- **(미세먼지)** 공기정화장치, 공조장치 등 미세먼지 저감 장치·시설의 운영관리를 강화하고, 위기징후 감시체계 구축 및 위기경보 발령 시 학사운영 대책방안 마련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3	2024	2025	합계	
소방보수 공사 비용	65	69	65	325	
소방설비 기능 점검	18	18	18	54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14	13	13	40	
계	97	100	96	293	

2. 안전사고

① 대학 안전사고

고등교육법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안전관리팀	팀장	박병준	051-890-1087, pbjun@deu.ac.kr	주관부서
팀원	안전관리팀		하민우	051-890-1090, 15380@deu.ac.kr	
팀장	학생지원팀	팀장	강성순	051-890-1041, rkd5304@deu.ac.kr	협조부서
팀원	학생지원팀		최성식	051-890-1043, sungsik@deu.ac.kr	

□ 위험요인

- (학교안전사고) 수업, 실습, 집단연수 등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 교육활동 중 낙상사고, 비래·전도, 충돌·협착, 화상, 교통사고 등의 학교안전사고의 발생으로 신체 장애, 정신적 피해 발생 및 학습 결손 초래

□ 피해현황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평균
발생건수	0	0	11	19	26	11.2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부상	0	0	11	19	26
	계	0	0	11	19	26

□ 원인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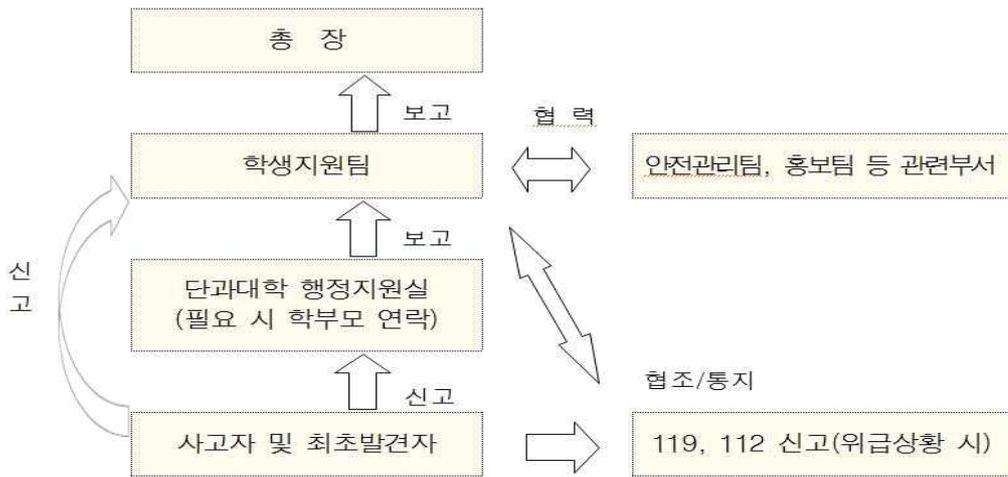
- 수업(실습), 동아리 활동, 체육대회 등 여러 행사 진행 중 안전불감증 및 부주의로 인한 사고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교내활동) 학교안전사고 유사사례, 통계 등의 검토·분석을 통한 사고유발 요인 사전 예방·대응관리와 안전사고 유형별 신속한 보고체계 및 적절한 보상·회복 지원 기반 조성
- (교외활동) 대학본부, 단과대학 등이 주관하여 교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행사 시 교통·숙박시설 이행, 행사관련 각종 보험가입 등 학생안전에 필요한 각종 사항 점검·교육



○ (학생안전사고 보고체계)



○ (사고유형 및 조치예방)

- 행사 안전(학과 및 주관부서 교직원 반드시 동행 지도)

구분	행사유형	사고유형	예방 및 조치	담당부서
교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 단과대학축제 ■ 체육대회 ■ 동아리활동 등 	· 음주 후 옥외 취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방 사전점검 · 행사장(주변)순찰 · 발견시 귀가 조치 	행사 주관부서
		· 행사중 안전사고 (타박상, 골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방 사전점검 · 구급약 비치 · 사고발생시 응급조치 · 119 구급대 후송 	행사 주관부서
		· 전기사고(감전, 합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방 사전점검 · 사고발생시 응급조치 · 119 구급대 후송 	행사 주관부서
		· 화재(폭발)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방 사전점검 · 행사장 주변 소화기 비치 · 행사장 순찰 · 사고발생시 응급조치 · 119 구급대 후송 	행사 주관부서

- 대규모 행사 안전

-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인파밀집상황 대비 사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시
-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입학식, 졸업식, 각종 축제 등 100명 이상의 대규모 행사는 참가자들의 신변안전을 위해 행사시설 사전점검 및 기간동안 안전요원 배치
- 사람이 많이 밀집된 장소에서는 교직원 등 안내자가 안내하도록 하고 앞 사람과의 간격을 유지하며 인파사고 예방조치로서 인파의 흐름에 따르면서 천천히 대각선 가장자리를 향해 움직이며 탈출로 찾기 (가장 가까운 출구 등 필히 확인)

구분	행사유형	사고유형	예방 및 조치	담당부서
교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MT ■ 각종 수련회 ■ 졸업여행 ■ 학술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주 후 야외취침 · 활동 중 상해 (타박상, 골절상) · 교통사고/추락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사고 예방 체크리스트 점검 · 현장지도 · 자체 순찰조 편성 및 활동 · 구급약품 준비 · 응급진료 기관 위치 파악 · 사고 응급조치/119 구급대 후송 	행사 주관부서 지도교수/학과(부)장/ 학생대표 행사 주관부서/ 학생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봉사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중 상해 (타박상, 골절상) · 교통사고/추락사고 · 기타사고 (농기구 상해, 별쏘임, 뱀물림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사고 예방 체크리스트 점검 · 현장지도 · 구급약품 준비 · 응급진료 기관 위치 파악 · 사고 응급조치/119 구급대 후송 	행사 주관부서/학생팀 행사 주관부서/단과 대학 행정지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주 후 옥외 취침 · 활동 중 상해 (타박상, 골절상) · 교통사고/추락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사고 예방 체크리스트 점검 · 현장지도 · 자체 순찰조 편성 및 활동 · 구급약품 준비 · 응급진료 기관 위치 파악 · 사고 응급조치/119 구급대 후송 	행사 주관부서 학장/학과(부)장 학장/학생대표 단과대학 행정 지원실

○ (캠퍼스 내 학생 개인활동)

사고유형	조치(예방)	담당부서
시설물 안전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기적인 시설물 안전점검 · 주기적인 교내순찰 · 응급조치 · 응급상황 시 119 구급대 후송 	안전관리팀/단과대학 행정지원실 안전관리팀/단과대학 행정지원실 단과대학 행정지원실/보건진료소 단과대학 행정지원실
상해(실족, 타박상, 골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조치 · 119 구급대 후송 	단과대학 행정지원실/보건진료소 단과대학 행정지원실
기타 사고(실종, 자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지원팀에 사고 현황 보고 · 유관기관(관할경찰서) 공조 	단과대학 행정지원실 학생지원팀/단과대학 행정지원실

○ (사고 발생 시 담당부서별 역할 및 조치)

구분	역할 및 조치사항
사고자 또는 최초 발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의 경중 판단 - 해당 단과대학 행정지원실 및 학생지원팀 신고 · 위급 시 119 구급대 신고 및 후송
단과대학 행정지원실 (단과대학 학생회 및 행정지원실 주관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조치 또는 환자 후송 · 담당 의사의 소견을 확인 · 사고 경위 파악 및 필요 시 학부모 연락 · 단과대학 행정지원실에서 사고 학생 및 부모님 면담 · 학생지원팀에 사고내용 보고 및 사고처리를 위한 협의 · 관련부서에 사고 내용 보고 ·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또는 여행자보험 신청
학생지원팀 (총학생회 주관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조치 및 환자 후송 · 사고 경위 파악 및 중대 사안일 경우 총장보고 · 원활한 대외인론을 위해 홍보팀과 긴밀한 협조 ·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또는 여행자보험 신청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3	2024	2025	합계	
동행지도비(교외행사시)	17	28	28	73	
계	17	28	28	73	

2 교육시설 안전사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시설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6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등

※ (관련 기준)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등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시설관리팀	팀장	김종현	051-890-3391, kjh75@deu.ac.kr	주관부서
팀원	시설관리팀		류동훈	051-890-3394, rdh0322@deu.ac.kr	

□ 위험요인

- (교내시설)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학교시설의 건설, 운영, 해체 등 건축물 생애주기 전(全)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물파손 및 인명피해
 - 건물 구조·성능, 교육활동 공간·환경, 건물 마감재료 및 기계·전기 설비 등 교육시설 주요 구성요소의 파손 및 기능저하에 따른 이용제한 및 학습지원 차질 초래
- (주변시설) 학교경계로부터 50미터 범위 내의 시설물(건물, 설비, 조경, 환경시설 등)의 설치·유지·보수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학교시설 및 학교구성원 피해
 - 학교 인접 공사장의 가설공사, 굴착공사, 작업차량·장비 이동·운용 등으로 학교 시설 파손·이상 징후 발생과 학교구성원 통학안전 위협 및 옥외 학습활동 제한

□ 피해현황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평균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부상	0	0	0	0	0
	계	0	0	0	0	0

□ 원인분석

- 사고 내역 없음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교내시설) 교육시설의 계획·설계단계부터 시공 및 유지관리까지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육시설안전 인증'을 적기에 취득하고, 안전·유지관리점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의 정기·중점적인 점검·관리를 통해 안전성능 유지관리
- (주변시설) 학교인접시설 공사 착공 전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 이용자 안전 위협 시 인·허가권자에게 안전확보 및 시정요청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3	2024	2025	합계	
건물 외벽 보수공사	283	109	320	712	
교내 각 건물 보수공사	353	2,212	2,000	4,565	
계	636	2,321	2,320	5,277	

※ 2024 ~ 2025년 까지 교육시설 안전인증 시행예정

3 연구실사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하여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며,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5조~제7조, 제9조, 제12조~제14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제29조 등

※ (관련 기준)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등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안전관리팀	팀장	박병준	051-890-1087, pbjun@deu.ac.kr	주관부서
팀원	안전관리팀		하민우	051-890-1090, 15380@deu.ac.kr	

□ 위험요인

- (연구실사고) 화학·물리·생물학적 위험요인 등으로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 연구활동 종사자의 생명·신체상 손해 및 연구실의 시설·장비 등의 훼손 발생
 - ※ [사고유형] 화학, 가스, 전기, 생물, 기계, 기타(화상, 상처출혈, 유해광선 접촉) 등 13개 사고 유형
 - 연구활동 중 연구실 내 화학물질·가스 누출·접촉 및 폭발, 감전·전기화재, 병원성 물질 유출, 끼임·절단 등의 사고발생으로 연구활동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 위협

□ 피해현황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평균
발생건수	0	0	1	2	2	1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부상	0	0	1	2	2
	계	0	0	1	2	2

□ 원인분석

- 실험 실시 전 개개인별 부주의(손가락 베임 등)에 의한 사고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개인보호구 착용 필수
 - 실험실습 전 개인보호구 사용방법 필수 확인
- 연구실안전교육 실시
 - 온라인 교육 진행함과 동시에 해당 실험실습 전 안전책임자 안전교육 실시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3	2024	2025	합계	
대학교비	46.5	40	40	126.5	
연구실안전관리비	70	70	70	210	
계	116.5	110	110	336.5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감염병 예방) 평상시 대비, 감염병 예방 교육 강화, 감염병을 조기 발견하고 사후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여 학교 내 감염병 확산 방지
- (감염병 위기대응) 감염병 상황별(평상시, 감염병 발생시, 국가감염병 위기 상황) 조치사항 마련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3	2024	2025	합계	
코로나19 방역	10	5	5.5	20.5	
방역 물품 구입	-	-	-	-	
계	10	5	5.5	20.5	

4. 범죄

1] 일반범죄

폭력행위처벌법 & 범죄피해자 보호법

폭력행위처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사람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기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등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救助)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총무인사팀	팀장	이영웅	051-890-1071, yolee@deu.ac.kr	주관부서
팀원	총무인사팀		안보현	051-890-1075, ok53abh@deu.ac.kr	
팀장	학생지원팀	팀장	강성순	051-890-1041, rkd5304@deu.ac.kr	
팀원	학생지원팀		최성식	051-890-1043, sunsik@deu.ac.kr	

□ 위험요인

○ **(폭행 행위)**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행하는 폭력행위

※ (집단)폭행, 협박, 강요, 체포, 감금, 상해, 공갈 등

- 학교 구성원간의 폭행, 외부인에 의한 폭행 등 학교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발생하는 폭력행위와 부적정한 대처로 범죄 피해자 발생 및 잠재적 범죄자 양산 초래

○ **(주거 침입)** 사람이 거주·관리하는 건조물·선박·항공기 등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범죄

※ 적법하게 주거권을 가지고 있는 자의 이사에 반해 타인의 주거·관리하는 시설 침입·점거

- 학교시설에 대한 외부인의 무단침입·점거,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의 범죄발생으로 학교구성원의 안전·신변 위협 및 학습권 침해

□ 일반 범죄 징계처리 절차

- 해당 부서 징계 요청 → 학생상벌심의위원회 심의 → 해당 부서 징계 통보
- 해당 부서 징계 요청 →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 직원 징계위원회 심의
→ 해당 부서 징계 통보

□ 피해현황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평균
발생건 수	0	0	0	0	0	0
피해자 수	0	0	0	0	0	0

□ 처리결과

- 동의대학교 「학생상벌에관한규정」 제3장 (징계)에 의거하여 징계처리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범죄예방)** 범죄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설계*를 시행하고, 순찰·신고 및 보고 체계 구축, 폭행사건 발생 시 초동대처요령 및 행동 매뉴얼 수립·교육 등의 사전대책방안 마련
- **(대응조치)** 범죄피해자·목격자의 신고·비상벨 작동 시 학생지원센터, 통합보안실 등 해당 지원부서 즉각 출동·조치 및 유관 기관(경찰서·소방서 등) 신고
- **(회복지원)** 범죄에 의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존엄성 보장과 명예·사생활 보호 및 회복·지원을 위해 범죄발생 초기부터 다양한 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전개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3	2024	2025	합계	
-	-	-	-	-	
계	-	-	-	-	

2 성범죄

양성평등기본법 & 성폭력처벌법

양성평등기본법

제20조(성희롱 방지조치 등)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제2조에 따른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 중 국가기관등이 아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같은 법에 따라 성희롱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10조, 제11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등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소장	인권센터	소장	김상조	051-890-1441, sjkim1325@deu.ac.kr	주 관 부 서
팀장	인권센터	실장	심준학	051-890-2906, jhsim@deu.ac.kr	
성 고충상담원	인권센터		박주리	051-890-1811, 15787@deu.ac.kr	
성 고충상담원	학생상담센터		배현규	051-890-1782, 15727@deu.ac.kr	

□ 위험요인

- **(성희롱 행위)** 업무, 고용 등의 관계에서 학교 종사자, 사용자, 근로자가 성적 언동,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는 행위
 - ※ 시각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육체적 성희롱 등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한 성적 언동과 성적 요구를 일삼고,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자행하는 등 개인의 존엄 경시 및 인권 유린상황 발생
- **(성폭력 범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 가해 행위
 - ※ (유사)강간, 준강간, (준)강제추행, 데이트성폭력, 스토킹, 통신매체 이용음란,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 강간, 강제추행,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의 성폭력 범죄 행위로 성적 약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위협

□ 피해현황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평균
발생건 수	성희롱	1	2	1	2	2	1.6
	성폭력	1	0	0	0	1	0.4
	계	2	2	1	2	3	2
피해자 수	성희롱	1	6	1	2	2	2.4
	성폭력	1	0	0	0	1	0.4
	계	2	6	1	2	3	2.8

□ 원인분석

- 성폭력 발생보다 성희롱 행위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가해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을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여 가해자의 성인지향성 및 인식 개선의 계기 마련
- 성범죄 예방과 인식개선을 위해 매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고위직·기숙사 관생 대상·신임교원 및 직원대상 대면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대상별 맞춤형교육으로 교육 내실화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고충상담원 교육을 이수한 고충상담 실시 및 본교 전용 성희롱·성폭력 신고 메일을 개설 하여 24시간 신고 접수
- 「인권센터규정」 및 「성희롱·성폭력예방과처리에관한지침」에 근거하여 성범죄 사건 발생 시, 2차 피해 예방,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시행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

상담단계	• 상담 신청 접수 → 상담 실시 → 피해자의 사건해결 방식 결정 → 조사·심의 → 신고 접수
조사 및 심의단계	• 조사신청서 제출 → 피신고인 고지 및 신고인 보호를 위한 피신고인에 대한 접근금지명령 → 예비조사 실시 → 조사심의위원회 구성 → 조사심의위원회 개최(당사자, 관계인 출석 및 진술 청취) → 진상 파악이 어려운 경우 2차 심의위원회 개최 → 조사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2차 피해 예방 조치, 징계요청 등) → 당사자 결과 통지 및 기관장에게 보고
징계단계	• 징계 요청 의결 시 → 징계 요청 → 징계위원회 개최(의결) → 징계 처분 및 통지(피신고인) → 징계 실행 → 사건종결

- ❖ **(상담)** 피해자와의 신뢰를 구축하여 피해자의 신체·심리·사회적 고충과 문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등을 강구함
- ❖ **(조사)** 관련 근거에 의거하여 조사를 개시하고, 피신고인으로 지목된 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 및 출석통지,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사심의위원회 회의 개최를 위한 보고서를 작성함
- ❖ **(심의)**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조사심의위원회는 신고인, 피해자, 피신고인, 참고인을 소환하여 사건의 사실관계, 행위의 심각성, 피해범위 및 영향 등을 심의의결 함
- ❖ **(징계·조치)** 조사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처분, 후속조치 및 개선추진함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3	2024	2025	합계	
재발방지 교육	2	1	1	4	
계	2	1	1	4	

5.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1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3조, 제15조~19조, 제25조, 제29조, 제32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54조

※ (관련 기준)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 현업업무 종사자 업무내용 규정

☞ 학교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학교 경비 및 학생 통학보조,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 관련 업무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안전관리팀	팀장	박병준	051-890-1087, pbjun@deu.ac.kr	주관부서
팀원	안전관리팀		고규혁	051-890-1089, 81251@deu.ac.kr	
팀장	시설관리팀	팀장	김종현	051-890-3391, kjh75@deu.ac.kr	협조부서
팀원	시설관리팀		권택준	051-890-3395, 81180@deu.ac.kr	
팀장	복지관리팀	팀장	김태진	051-890-1113, geenie@deu.ac.kr	협조부서
팀원	복지관리팀		김준호	051-890-2527, goxmas@deu.ac.kr	

□ 위험요인

○ (산업재해)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 (주요사유) 안전(예방)대책 미비·부실, 근로자 피로, 작업상 부주의·실수, 숙련 미달 등
- 사업장별 잠재적 위해·위험요인에 의한 산업재해의 발생으로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의 위협과 노동생산성 저하 및 효율성 저해

□ 피해현황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평균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부상	0	0	0	0	0
	계	0	0	0	0	0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안전조치) 위험기계·위험물질 사용 시, 조작·운반 등 위험한 작업 시, 추락·붕괴 등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조치 이행
- (보건조치) 분진·흙·병원체, 고온·저온·소음과 적정기준 미준수 등에 의한 건강장해발생과 단순 반복작업 등의 인체 부담작업 시 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조치이행

《 산업재해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①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 구축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자체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
-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관리감독자 등을 선임하여 안전·보건업무 수행

※ (의무대상)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경비 및 통학보조, 조리시설 등 현업업무 종사자

○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은 작업으로 인한 유해·위험을 인지하고 스스로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

대상근로자 선정	교육방법 선정	교육 실시	서류보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직원 • 관리감독자 • 신규 입사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집체/현장/인터넷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교육 • 채용 시 교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 기록보존 (3년 보존 권장)

○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작업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유해인자(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에 근로자의 노출 수준을 평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
- 작업환경측정을 통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유해인자의 노출수준을 확인하여 이에 따른 직업병 발생 예방

측정대상물질 확인	예비조사	작업환경측정 실시	결과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SDS 확인 (작업환경측정 의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환경측정기관에서 예비조사 (작업환경대상 여부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방법, 측정시간에 따라 측정실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의 보존기한

○ 근로자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건강상태 및 수준을 파악,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 적절한 작업배치와 직업성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사후관리
- 집단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병이나 건강장해 요인을 가진 근로자의

발견과 적절한 조치

대상근로자 선정	건강진단기관에 진단의뢰	건강진단 실시 및 결과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직) 2년에 1회 - (사무직 외) 1년에 1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진단기관에 의뢰 또는 근로자 개별 희망기관에서 실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진 대상자 독려

○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산업재해 발생에 대해 은폐해서는 안 되며, 재해를 통해 향후 동종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시행

재해유형 확인 및 보고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재발방지 계획 수립 및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미한 사고 • 3일 이상 휴업재해 • 중대재해(즉시 보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발생일로부터 <u>1개월 이내</u> 고용노동부 제출 - 업무상질병일 경우 산재 승인일 기준 1개월 이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발방지계획서 작성 • 수시위험성평가 • 수시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 산업재해 통계기록 및 유지·관리

- 산업재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 수립·시행을 위한 기초 자료 활용, 국립대학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방향 설정
- 교육부의 산업재해 통계 보고 양식에 따라, 교육기관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매년(연초) 관리

○ 안전시설 및 보호구

- 보호구 착용은 작업환경 또는 작업수행 시 발생하는 유해·위험으로부터 신체를 보호
- 노출된 유해·위험의 종류를 알고 그에 적절한 보호구를 선정하여 지급하고 필요시 착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

대상작업 파악	보호구 선정 및 구입	보호구 지급	서류보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구 지급 대상 유해 위험 작업 파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에 따른 적절 보호구 선정 및 구입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구 지급 및 올바른 착용 방법 교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구지급 대장 서류 기록보존(3년)

○ 유해·위험 방지 활동

- 위험성 평가

- 산업재해를 미리 방지하고,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해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수립·시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
 -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
-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연 1회, 수시평가는 건물, 기계·기구 등의 보수 또는 신규도입 및 재해 발생 시 실시

-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 있는 작업을 대상으로 유해요인을 찾아 제거하거나 감소하기 위해 조사
-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3년마다 1회, 수시평가는 건물, 기계.기구 등의 보수 또는 신규도입 및 재해 발생시 실시

②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안전확인 및 조치

-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극복을 위해 안전 확보 및 현장 보존

-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현장 관계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 조치
- 피해자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한다거나 장소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같이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즉각적인 조치를 제외한 사고현장 보존
- 필요한 경우, 112 또는 119에 신고

○ 사고보고 및 지원요청

- 현장 관계자로부터 사고 또는 응급상황을 연락·보고받은 경우 사고 또는 위급 상황에 대한 최초 사고 등급 평가 실시 및 보고 수준 결정

- '심각'(빨간색), '경계'(주황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 및 교육부에 보고
- '주의'(노란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에게 보고
- '관심'(파란색)으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이 관리

-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 중대재해 발생 시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발생개요·피해상황, 조치·전망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

○ 보험사고의 통지 및 관리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발생 시 해당 보험의 청구 시스템을 통해 이를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로 인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의 협의를 통한 사고 위험성 관리와 재발방지 실행계획 수립·실행으로 보고 종결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즉각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는 심각한 손상이나 사고에 대해 최단 기간 내 협의에 착수

㉓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지원 및 복구 실행

- 사고 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고(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조치·지원

- 학생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및 지속적인 위험관리 전략 수립·시행
- 경찰 신고를 포함한 학생이나 그 가족이 하고자 하는 법적 처리와 배상 청구 활동의 지원

- 피해자에 대한 치료, 상담, 그 밖의 전문적인 지원서비스 등의 지속적 지원

○ 사고 조사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성격에 따라 학교경영자, 간부교직원, 안전·보건담당자, 피해자(또는 보호자), 관련 교직원 등으로 사고조사(지원)팀 구성·운영

- 조사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예비검사(preliminary screening) : 보고일로 부터 2일 이내 착수
※ 사고 등급에 따른 착수의 책임 : △(관심주의)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 △(경계심각) 학교장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원인과 잠재적 위험요인 확인
- 위험성 통제와 예방적 조치 사항 제시

○ 사고 검토

- 사고(또는 위급상황) 관리에 있어 무엇이 효과적인지를 조사하고, 사고 원인 개선의 기회를 확인해 재발방지조치 개발·시행

- '주의', '경계', '심각' 등급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경우,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검토를 통해 재발방지책 마련·시행

- (물리적 차원) 시설, 기계, 환경 등 물리적 특성과 관련된 공학적 또는 유지보수를 통한 재발방지책
- (조직적 차원) 안전관리상의 규정, 절차, 방법 등 조직적 특성과 관련된 규정·절차·방법의 신설 또는 개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교육적 차원) 안전교육이나 안전지도의 부족이나 부적절성과 같은 교육적 특성과 관련된 지도·교육의 실시 또는 교육과정의 수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일반적으로 사고 검토는 사고 발생로부터 3일 이내에 착수되어 21일 이내에 완료 단, 시간적 또는 재정적 영향을 받는 사고 검토의 경우에는 기한 미적용

○ 사고 종결

- 사건 종결은 사고(또는 위급상황)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적절한 지원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신한다거나, 진행 중인 관련 조사나 검토가 완료되었을 경우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었다는 책임자의 논평을 통해 종결

< 사고 등급에 따른 사건 종결 승인 담당자(기관) >

사건 종결 권한	사고 심각성 등급
대학의 기관, 조직, 집단의 장	관심 (파란색)
	주의 (노란색)
학교장(대학의 기관, 조직, 집단의 장과 협의)	경계 (주황색)
교육부장관(학교장과 협의)	심각 (빨간색)

○ (사고규모별 보고절차)

○ 경미한 사고

- 응급조치 후 바로 근무 가능한 사고
- (보고절차) 별도 신고의무 없으며, 기관자체 종결 처리

○ 3일 이상 휴업재해

-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
 - 휴업은 연속 3일 이상이어야 함
 - 휴업일수에 재해발생일은 미포함이며, 휴무일·공휴일 포함
 - 휴업기간은 의사의 진단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의해 판단
- (보고절차) 사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 (시행규칙별지 제30호 서식)를 작성하여, 근로자대표 또는 재해자 확인을 받아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보고(팩스, 인터넷 등) 및 산재예방지도과에 공문 제출

○ 중대재해

- 즉시 해당 작업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 시행
- (보고절차1) 다음의 내용을 **지체 없이*** 전화, 팩스로 보고
 - ①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② 조치 및 전망 ③ 그 밖의 중요한 사항
 - * **지체 없이란? 특별한(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를 말함**
- (보고절차2) 사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 (시행규칙별지 제30호 서식)를 작성하여, 근로자대표 또는 재해자 확인을 받아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보고(팩스, 인터넷 등) 및 산재예방지도과에 공문 제출

○ (동의대학교 안전보건관리 조직별 주요업무)

주관	주요 업무		
동의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처장 	<p><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총괄관리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 작업환경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지휘 감독 		
	안전 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 	보건 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 ■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
관리감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관리팀장 ■ 시설관리팀장 ■ 용역회사 소장 ■ 보안회사 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등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응급조치 ■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산업보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 지도 ■ 근로자의 건강장애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 및 이행계획 참조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의무주체	사업주 : 사업장 단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행위자로 처벌
보호대상	근로자, 수급인의 근로자
처벌대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망)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그외) 안전보건조치 미준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재해정의	(중대재해) 산업재해 중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3개월 이상 요양 필요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발생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발생
의무 이행사항	1.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 구축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기록 및 유지·관리 8. 안전시설 및 보호구 구입에 관한 사항 9. 기타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3	2024	2025	합계	
산업안전보건 위탁 관리	4	4	4.8	12.8	
산업안전관리 물품구입	5	5	5	15	
계	9	9	9.8	27.8	

2 중대재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2조~제4조, 제6조, 제9조 등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법인	팀장	박병준	051-890-1087, pbjun@deu.ac.kr	전담조직
팀원	법인		강진우	051-890-1088, 81273@deu.ac.kr	
팀원	법인		류동훈	051-890-3394, rdh0322@deu.ac.kr	

□ 위험요인

-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를 통칭하나, 공공이용시설(교육기관)은 중대시민재해 범위에서 제외되어 교육기관은 '중대산업재해*만 해당

*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 1인 이상 발생, 동일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발생 등
- 사업장별 잠재적 위해·위험요인에 의한 중대한 산업재해의 발생으로 근로자의 안전사고 위험노출 및 신체적·정신적 건강위험

□ 피해현황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평균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부상	0	0	0	0	0
	계	0	0	0	0	0

□ 원인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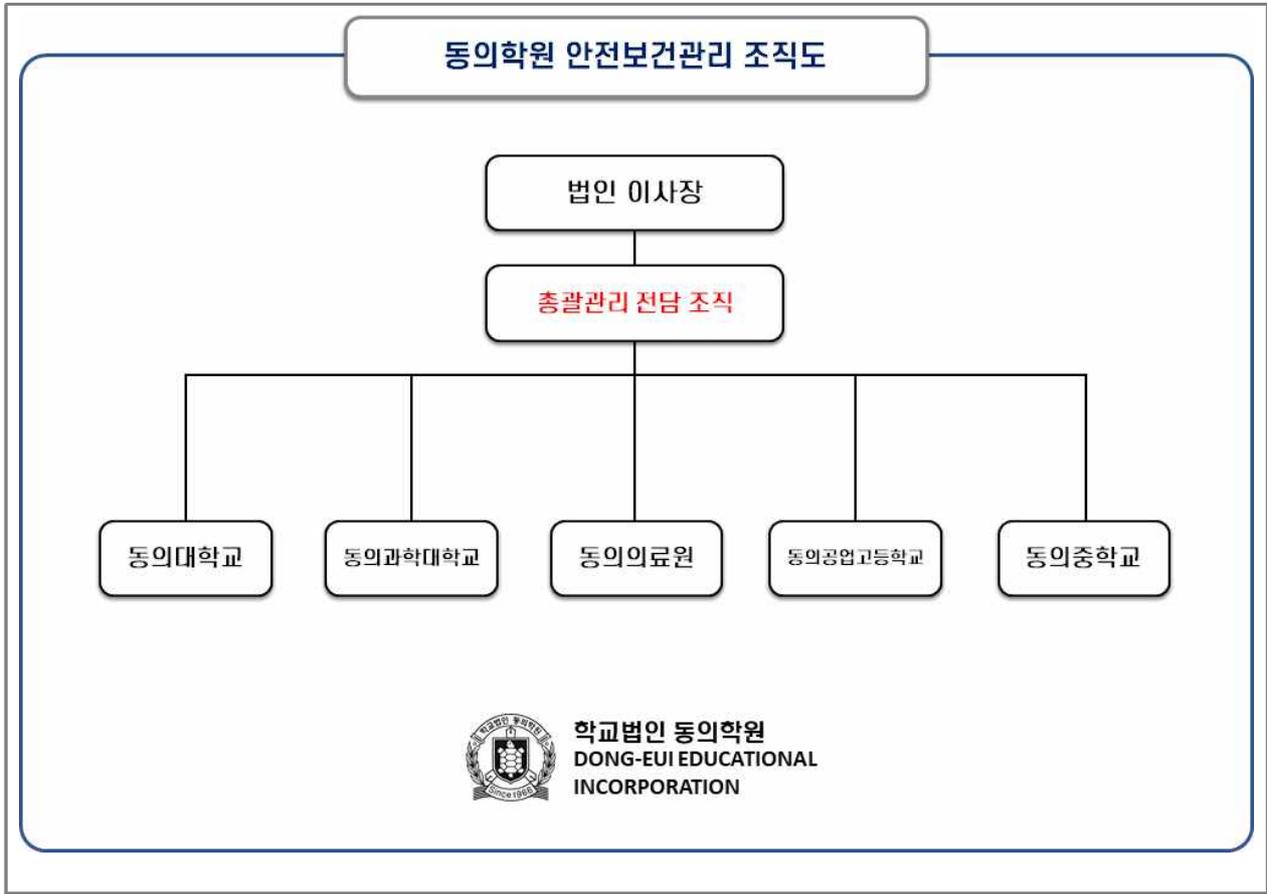
- 사고 내역 없음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체계구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으로 학교 중대재해 예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선제적·자율적으로 유해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안전체계 구축
- **(환경조성)**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재해 없는 근로환경 조성
 -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조치, 재해발생 시 재해재발 방지대책 수립,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등
 -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교육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중대재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모두가 안전한 교육환경 구현

중대재해 관리체계 및 이행계획 참조

구분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주체	경영책임자 : 법인은 양벌규정으로 처벌
보호대상	종사자 : 근로자, 노무제공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처벌대상	경영책임자 (사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그외)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재해정의	(중대산업재해) 산안법상 산업재해 중 - 사망자 1명 이상 -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가 2명 이상 -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교육기관 제외
의무 이행사항	<p>«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2. 총괄 관리 전담 조직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트롤타워 역할: 총괄관리의 의미로 안전·보건업무 직접수행의 의미는 아님 3.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및 점검·조치 4. 인력, 시설, 장비 구비 및 개선 예산편성 집행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6. 전문인력 배치(안전·보건관리자 등) 7.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점검 8.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매뉴얼 마련 9. 제3자의 도급, 용역, 위탁의 안전관리를 위한 평가기준 및 절차 마련 <p>«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반기 1회 이상 점검, 결과보고 2. 인력, 예산 지원 3.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확인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3	2024	2025	합계	
-	-	-	10	10	
계	-	-	10	10	

6. 기타

1 비상사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 통합방위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이하 "비상사태"라 한다)에 국가의 인력·물자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자원관리·교육 및 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9조2, 제13조의5 등

통합방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적(敵)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총력전(總力戰)의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방위요소를 통합·운영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17조, 제13조의5 등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2. 7. 5. 시행 예정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총무인사팀	팀장	이영웅	051-890-1071, yolee@deu.ac.kr	주관부서
팀원	총무인사팀		안보현	051-890-1075, ok53abh@deu.ac.kr	
팀장	안전관리팀	팀장	박병준	051-890-1087, pbjun@deu.ac.kr	협조부서
팀원	안전관리팀		고규혁	051-890-1089, 81251@deu.ac.kr	

□ 위험요인

- (비상사태) 전시·사변(국가적 난리·변고) 및 이에 준하는 사태 등이 발생하여 국가·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국가차원의 긴급 상황
 - 공습·포격, 핵·방사능 피폭, 생물·화학무기 피해 등 적 공격에 따른 국가 비상사태의 발생으로 국가의 주요 시설 파손 및 국민의 생명·재산 피해

□ 피해현황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평균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부상	0	0	0	0	0
	계	0	0	0	0	0

□ 원인분석

○ 자체조사 결과

- 전시, 사변, 폭동 등 국가차원의 비상사태는 발생된 사례가 없으나, 관련 법령 및 충무계획 등에 따른 평시·전시 계획수립 및 교육·훈련 실시 필요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계획수립)** 비상시 행동요령, 비상대비물자 준비·사용요령, 부상자 응급조치, 인명·시설 피해복구 등 비상사태에 효율적으로 대비·대응하기 위한 충무실시계획 등 수립
- **(비상조직)** 전시·비상 시 대응을 위해 비상조직체계 구축을 통해 부서·개인별 임무·역할의 명확한 규정·부여 및 신속·정확한 의사결정과 상황통제·관리
- **(교육·훈련)** 비상대비업무담당자, 필수·핵심요원 등에 대한 주기적인 비상대비 교육과 재난대비훈련·민방위 훈련 등과 연계하여 사태·상황별 정기적인 훈련 실시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3	2024	2025	합계	
-	-	-	-	-	
계	-	-	-	-	

1. 대학보험(공제) 가입 총괄현황

구분		대인(학교구성원)	대물(교육시설)
공통	대학	대학안전사고보상공제	대학안전사고보상공제
	연구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한국교육시설안전원

2. 대학배상책임보험(공제)

민법 & 학교안전법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학교안전법

제29조(공제중앙회의 사업) ① 공제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5의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한 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

※ (관련 규정) 보험업 감독규정

☞ 제1-2조의2(보험계약 및 보험종목의 구분기준) 영 제1조의2제5항에서 "보험계약의 구체적 구분기준" 및 영 제8조제2항에서 "보험종목의 구체적 구분기준"이란 별표1에 따른 구분기준을 말한다.

□ 가입현황

(단위 : 천원)

기준 연도	보험(공제) 상품명	시작일 종료일	1인당 보험료 (A)	학생수 (B)	연간 총보험료 (C)	보험(공제)청구				비고
						인적		물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3	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	2023.03.02. ~2024.03.01	2.3	15,000	34,609	19	18,363	-	-	
2024	대학안전사고 보상공제	2024.03.02. ~2025.03.01	1.6	15,000	24,912	26	22,749	-	-	25.02.17 기준
2025	대학안전사고 보상공제	2025.03.01. ~2026.03.01	1.7	15,000	26,052					

□ 보상한도

담보대상	보상구분	보상한도액(천원)		비고
		1인당	1사고당	
대학안전사고보상공제 교직원 배상책임, 시설물 배상 책임 포함	대인	100,1000	500,000	(자기부담금 100,000원)
	대물	-	100,000	(자기부담금 100,000원)
교내, 교외 치료비 (신입생OT포함)	치료비	2,000	2,000	-

3. 교육시설안전보험(공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특수건물의 소유자에게 경과실(輕過失)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보험 가입의 의무)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해당 건물의 손해를 보상받고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 특수건물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관련 기준) 교육시설안전원 교육시설공제 공제급여 기준

[공제급여 대상] 화재(벼락 포함)·폭발·붕괴·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한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발생한 공제가입 목적물의 손해 또는 제3자의 법률상 배상책임(대인·대물) 등

□ 가입현황

(단위 : 천원)

기준 연도	보험(공제) 상품명	시작일 종료일	건물 보험료 (A)	건물 면적 (B)	연간 총보험료 (C)	보험(공제)청구				비고
						신체		재물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3	교육시설재 난공제보험	23.01.01.~ 23.12.31.	37,704	251,365	51,533			1	1,540	
2024	교육시설재 난공제보험	24.01.01.~ 24.12.31.	37,704	251,365	53,251			1	14,958	
2025	교육시설재 난공제보험	25.01.01.~ 25.12.31.	37,486	249,909	53,209					남해수련원 철거

□ 보상한도

담보대상	보상한도/자기부담금(천원)		비고
	1인당	1사고당	
시설물소유자배상책임(대인)	300,000	500,000	
시설물소유자배상책임(대물)	-	200,000	

4. 연구실안전보험(공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6조(보험가입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가입현황

(단위 : 천원)

기준 연도	보험(공제) 상품명	시작일 종료일	1인당 보험료 (A)	학생수 (B)	연간 총보험료 (C)	보험(공제)청구				비고
						인적		물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3	연구실안전 공제	23. 4. 27. ~ 24. 4. 26.	22	8,909	19,747	1	107	-	-	
2024	연구실안전 공제	24. 4. 27. ~ 25. 4. 26.	2	7,509	15,519	2	254	-	-	

□ 보상한도

담보대상	보상한도/자기부담금(천원)		비고
	1인당	1사고당	
유족급여		200,000	
장해급여		200,000	
요양급여		2,000,000	
장의비		10,000	
입원급여		50	

1. 재난안전훈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14(재난대비훈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이하 "훈련주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참여하는 재난대비훈련을 각각 소관 분야별로 주관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팀장	안전관리팀	팀장	박병준	051-890-1087, pbjun@deu.ac.kr	주관부서
팀원	안전관리팀		고규혁	051-890-1089, 81251@deu.ac.kr	

□ 2024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명)	예산
학생 및 교직원	24. 4. 12.	2시간	70	-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소방합동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화훈련(소화기 사용, 옥내소화전 사용, 화재진압 방법) ▪ 통보훈련(119신고 요령, 자위소방대 전달) ▪ 피난훈련(피난유도, 피난보조)

□ 2025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명)	예산
학생 및 교직원	11월 중	2시간	100	-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대학 재난안전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 안전 점검 회의 ▪ 재난안전관리 관련 토론 회의 ▪ 지진·화재 현장대응 실제 훈련

2. 대학 안전사고 예방 교육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0조(학교 등에서의 안전교육)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팀장	학생지원팀	팀장	강성순	051-890-1041, rkd5304@deu.ac.kr	주관부서
팀원	학생지원팀		최성식	051-890-1043, sungsik@deu.ac.kr	
팀장	안전관리팀	팀장	박병준	051-890-1087, pbjun@deu.ac.kr	협조부서
팀원	안전관리팀		하민우	051-890-1090, 15380@deu.ac.kr	

□ 2024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횟수 (건)	예산
학생	수시	1	91	-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학생교내외행사 안전교육	① 음주, 폭행(성희롱, 성폭행) 등 사전 예방교육 ② 행사 장소 소화기·비상구·완강기 등 위치 확인 ③ 개별 활동(야간음주, 노래방 등) 자제 교육 ④ 회비 징수하는 행사는 회비 집행 내역 공개

□ 2025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횟수 (건)	예산
학생	수시	1	수시	-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학생교내외행사 안전교육	① 음주, 폭행(성희롱, 성폭행) 등 사전 예방교육 ② 행사 장소 소화기·비상구·완강기 등 위치 확인 ③ 개별 활동(야간음주, 노래방 등) 자제 교육 ④ 회비 징수하는 행사는 회비 집행 내역 공개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 사용방법	①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사용 방법 교육

4. 연구실 안전교육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제20조(교육·훈련)**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제10조제1항·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④ 연구주체의 장은 제10조제1항·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과 방법, 교육·훈련 담당자의 요건 및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팀장	안전관리팀	팀장	박병준	051-890-1087, pbjun@deu.ac.kr	주관부서
팀원	안전관리팀		하민우	051-890-1090, 15380@deu.ac.kr	

□ 2024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만원)
신규교육훈련	신규교육	2	813	1000
정기교육훈련	정기교육	2	4312	
LMO안전교육	LMO	1	3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신규·정기교육훈련	▪ 연구실 안전교육 (소방, 전기, 일반안전 등)
LMO교육훈련	▪ 연구실 안전교육 (생물안전, LMO 법 등)

□ 2025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만원)
신규교육훈련	신규교육	2	800	1000
정기교육훈련	정기교육	2	4000	
LMO안전교육	LMO	1	5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신규·정기교육훈련	▪ 연구실 안전교육 (소방, 전기, 일반안전 등)
LMO교육훈련	▪ 연구실 안전교육 (생물안전, LMO 법 등)

5. 감염병 예방교육

감염병 예방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15.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안전관리팀	팀장	박병준	051-890-1087, pbjun@deu.ac.kr	주관부서
팀원	안전관리팀		고규혁	051-890-1089, 81251@deu.ac.kr	
팀장	보건진료소	소장	윤현민	051-890-1058, yhmin@deu.ac.kr	협조부서

2024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 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
교육·훈련 내역 없음	-	-	-	-

2025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 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
교육·훈련 계획 없음	-	-	-	-

6. 성범죄 예방교육

성폭력방지법 등

성폭력방지법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기관 내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고등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①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기관등과 사업장 등에 소속된 사람(해당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자체 예방지침의 마련,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 및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소장	인권센터	소장	김상조	051-890-1441, sjkim1325@deu.ac.kr	주관부서
팀장	인권센터	실장	심준학	051-890-2906, jhsim@deu.ac.kr	
팀원	인권센터		손효정	051-890-2908, mundis@deu.ac.kr	
과장	교무팀		백경렬	051-890-1046, baekbr@deu.ac.kr	협조부서
팀원	총무인사팀		김향미	051-890-1074, hyangmi@deu.ac.kr	
팀원	학생상담센터		김민철	051-890-1781, 15720@deu.ac.kr	

□ 2024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대상	과정	방법	교육일	인원	예산(만원)
재학생	성폭력예방	시청각	2024.4.19.~12.23.	8,765	50
	가정폭력예방			8,544	
교원 (총장 포함)	가정폭력예방	시청각 /대면	2024.5.20.~6.26	830	100
	성매매예방		2024.11.18.~12.31.(추가)	829	
	성희롱예방		2024.11.18.~12.31.	796	
	성폭력예방	793			
	4대폭력예방	시청각	2024.12.11.~12.31	1*	
직원 (연구원 포함)	4대폭력예방	사이버 /시청각	2024.11.18.~12.17.	427	-
		시청각 /대면	2024.12.11.~12.31.	9*	43
고위직	고위직별도교육	대면	2024.8.20	24	33
		시청각	2024.8.30.~9.30	5	
기숙사 관생	성인지교육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시청각	2024.5.9	44	30

※ 교원 및 직원 대상 교육 이수 인원은 신규임용대상자 및 고위직별도교육 교육 이수자 포함

※ *2024년 11월 이후 신규임용 대상자 교육 이수 인원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재학생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교원 및 교직원	성폭력·성희롱·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 2025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만원)
학생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2	15,000	50
	기숙사관생대상 성인지교육	1	50	30
교원	4대폭력 예방교육	1	800	100
교직원	4대폭력 예방교육	1	460	-
고위직(교원+직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1	30	30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재학생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교원 및 교직원	성폭력·성희롱·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7. 비상대비 교육·훈련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 제20조의4(비상대비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3조의5에 따라 매년 비상대비교육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비상대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 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비상대비교육 계획에 따라 비상대비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총무인사팀	팀장	이영웅	051-890-1071, yolee@deu.ac.kr	주관부서
팀원	총무인사팀		안보현	051-890-1075, ok53abh@deu.ac.kr	
팀장	안전관리팀	팀장	박병준	051-890-1087, pbjun@deu.ac.kr	협조부서
팀원	안전관리팀		고규혁	051-890-1089, 81251@deu.ac.kr	

2024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	-	-	-	-

2025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 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
-	-	-	-	-

1. 대학 캠퍼스 지원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대학교 캠퍼스 내외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을 위해 지자체 재난안전 부서, 소방서, 경찰서, 병원 등 유관기관과 재난전문가(교수, 박사 등),외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대학 캠퍼스 지원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캠퍼스 내외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계획, 대학 학교안전 관련 주요정책, 유관기관 협업과제 발굴 등 안전 및 보건의 확보 및 개선에 관한 의견 청취(년 2회 이상)

2. 사고 유형별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방법

□ 재난

1) 평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기관명	상황실		비고
	전화번호	e-mail	
소방재난본부	051-760-3000		
부산진소방서	051-760-4280, 119		
한국전기안전공사	051-960-5200		
한국가스안전공사	1544-4500		
한국전력공사	123		
지역 병원	051-867-5101		백병원
	051-850-8777		백병원 (응급실)
	051-890-6114		동의의료원
	051-890-6220		동의의료원 (응급실)
지역 보건소	051-645-4000		부산진구보건소

2) 상황실 운영 시

기관명	상황실		비고
	전화번호	e-mail	
통합상황실 (재난 전 분야)	051-890-1080	mjchoi@deu.ac.kr	
	051-890-1087	pbjun@deu.ac.kr	
	051-890-1090	15380@deu.ac.kr	

□ 안전사고

1) 평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기관명	상황실		비고
	전화번호	e-mail	
소방재난본부	051-760-3000		
부산진소방서	051-760-4280, 119		
한국전기안전공사	051-960-5200		
한국가스안전공사	1544-4500		
한국전력공사	123		
지역 병원	051-867-5101		백병원
	051-850-8777		백병원 (응급실)
	051-890-6114		동의의료원
	051-890-6220		동의의료원 (응급실)
지역 보건소	051-645-4000		부산진구보건소

2) 상황실 운영 시

기관명	상황실		비고
	전화번호	e-mail	
통합상황실 (재난 전 분야)	051-890-1080	mjchoi@deu.ac.kr	
	051-890-1087	pbjun@deu.ac.kr	
	051-890-1090	15380@deu.ac.kr	

□ 감염병 확산

1) 평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기관명	상황실		비고
	전화번호	e-mail	
중앙사고수습본부	044-202-2117		
중앙방역대책본부	1339		
국립중앙의료원	02-2260-7114		
환경부	1577-8866		
지역 보건소	051-645-4000		부산진구보건소

2) 상황실 운영 시

기관명	상황실		비고
	전화번호	e-mail	
통합상황실 (재난 전 분야)	051-890-1080	mjchoi@deu.ac.kr	
	051-890-1087	pbjun@deu.ac.kr	
	051-890-1090	15380@deu.ac.kr	

□ 범죄

1) 평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기관명	상황실		비고
	전화번호	e-mail	
법무부 스마일센터	051-582-1295		
검찰	1301		
경찰청	182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02-586-1295		
해바라기센터	051-244-1375		

□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1) 평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기관명	상황실		비고
	전화번호	e-mail	
소방재난본부	051-760-3000		
부산진소방서	051-760-4280, 119		
한국전기안전공사	051-960-5200		
한국가스안전공사	1544-4500		
한국전력공사	123		
지역 병원	051-867-5101		백병원
	051-850-8777		백병원 (응급실)
	051-890-6114		동의의료원
	051-890-6220		동의의료원 (응급실)
지역 보건소	051-645-4000		부산진구보건소

2) 상황실 운영 시

기관명	상황실		비고
	전화번호	e-mail	
통합상황실 (재난 전 분야)	051-890-1080	mjchoi@deu.ac.kr	
	051-890-1087	pbjun@deu.ac.kr	
	051-890-1090	15380@deu.ac.kr	

1. 역할과 임무

- 대학안전관리계획 작성 부서에서는 계획의 수립·시행, 이행점검, 대책수립 수행
- 위험별 상황관리전담 부서에서는 지휘부(총괄 담당, 상황 총괄), 실무반(상황 대응, 사고 수습, 당직), 협조부서(언론 대응, 예산 협력, 유관기관 협력) 등으로 구분하여 위험상황 대응 및 관리 수행

2. 관계 법령 등 연계

- 관련 법령, 재난안전관리 규정, 및 위기대응 표준·실무·행동매뉴얼 등을 기반으로 대학안전관리계획 수립 필요
 - 관계 법령·규정·매뉴얼 개정 시 대학안전관리계획 보완 필요
- 시·도 및 시·군·구 등 유관기관 안전관리계획과 연계·협조하여 대학안전관리 집행계획 및 세부집행계획 수립 필요

3. 대학 업무연속성계획(BCP : Business Continuity Plan) 수립·시행

- 감염병 대응 등을 위한 비상조직체계를 구성하고, 팀·개인별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한 후 개인별 임무 숙지를 위한 교육·안내 실시
- 각 대학은 중대본 발표, 학내 확진자 발생률에 따라 시행할 비상대응계획인 기능연속성 계획 사전수립 및 학내 공유
 - 비상상황에도 유지해야할 필수·핵심기능을 사전에 설정하고, 유행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치

4. 대학별 안전관리 규정 마련·운영

- 대학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대학별 자체 '안전관리 규정' 마련·운영
 - 대학안전관리의 구체적 적용 대상 및 범위 설정
 - 안전교육 실시, 안전대책의 점검·확인 등 학교장의 책무 규정
 - 대학안전관리 위험성평가 대상 및 방법·절차 규정
 - 대학안전사고 예방·조사 위원회 구성·운영관리
 - 대학안전관리 조직 구성·운영관리
 - 안전관리 협의체 구성·운영관리 등

붙임1

위험요인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 현황(총괄)

위험유형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1. 재난	① 자연 재난	팀장	안전관리팀	팀장	박병준	051-890-1087, pbjun@deu.ac.kr	주관부서
		팀원	안전관리팀		강진우	051-890-1088, 81273@deu.ac.kr	
		팀장	시설관리팀	팀장	김종현	051-890-3391, kjh75@deu.ac.kr	협조부서
		팀원	시설관리팀		류동훈	051-890-3394, rdh0322@deu.ac.kr	
	② 사회 재난	팀장	안전관리팀	팀장	박병준	051-890-1087, pbjun@deu.ac.kr	주관부서
		팀원	안전관리팀		강진우	051-890-1088, 81273@deu.ac.kr	
2. 안전 사고	① 대학 안전 사고	팀장	안전관리팀	팀장	박병준	051-890-1087, pbjun@deu.ac.kr	주관부서
		팀원	안전관리팀		하민우	051-890-1090, 15380@deu.ac.kr	
		팀장	학생지원팀	팀장	강성순	051-890-1041, rkd5304@deu.ac.kr	협조부서
		팀원	학생지원팀		최성식	051-890-1043, sungsik@deu.ac.kr	
	② 교육 시설 안전 사고	팀장	시설관리팀	팀장	김종현	051-890-3391, kjh75@deu.ac.kr	주관부서
		팀원	시설관리팀		류동훈	051-890-3394, rdh0322@deu.ac.kr	
③ 연구실 사고	팀장	안전관리팀	팀장	박병준	051-890-1087, pbjun@deu.ac.kr	주관부서	
	팀원	안전관리팀		하민우	051-890-1090, 15380@deu.ac.kr		
3. 감염병 확산	① 코로나- 19	소장	보건진료소	소장	윤현민	051-890-1058, yhmin@deu.ac.kr	주관부서
		팀원	보건진료소		최미영	051-890-1119, shona@deu.ac.kr	
4. 범죄	① 일반 범죄	팀장	총무인사팀	팀장	이영웅	051-890-1071, yolee@deu.ac.kr	주관부서
		팀원	총무인사팀		안보현	051-890-1075, ok53abh@deu.ac.kr	
		팀장	학생지원팀	팀장	강성순	051-890-1041, rkd5304@deu.ac.kr	
		팀원	학생지원팀		최성식	051-890-1043, sungsik@deu.ac.kr	
	② 성범죄	소장	인권센터	소장	김상조	051-890-1441, sjkim1325@deu.ac.kr	주관부서
		실장	인권센터	실장	심준학	051-890-2906, jhsim@deu.ac.kr	
		성 고충상담원	인권센터	박주리	051-890-1811, 15787@deu.ac.kr		
		성 고충상담원	학생상담센터	배현규	051-890-1782, 15727@deu.ac.kr		
5. 산업 재해 및 중대 재해	① 산업 재해	팀장	안전관리팀	팀장	박병준	051-890-1087, pbjun@deu.ac.kr	주관부서
		팀원	안전관리팀		고규혁	051-890-1089, 81251@deu.ac.kr	
		팀장	시설관리팀	팀장	김종현	051-890-3391, kjh75@deu.ac.kr	협조부서
		팀원	시설관리팀		권택준	051-890-3395, 81180@deu.ac.kr	
		팀장	복지관리팀	팀장	김태진	051-890-1113, geenie@deu.ac.kr	협조부서
	팀원	복지관리팀		김준호	051-890-2527, goxmas@deu.ac.kr		
	② 중대 재해	팀장	법인	팀장	박병준	051-890-1087, pbjun@deu.ac.kr	전담조직
팀원		법인		강진우	051-890-1088, 81273@deu.ac.kr		
		팀원	법인		류동훈	051-890-3394, rdh0322@deu.ac.kr	
6. 기타	① 비상 사태	팀장	총무인사팀	팀장	이영웅	051-890-1071, yolee@deu.ac.kr	주관부서
		팀원	총무인사팀		안보현	051-890-1075, ok53abh@deu.ac.kr	
		팀장	안전관리팀	팀장	박병준	051-890-1087, pbjun@deu.ac.kr	협조부서
		팀원	안전관리팀		고규혁	051-890-1089, 81251@deu.ac.kr	

붙임2

위험요인별 피해 현황(총괄)

위험유형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평균	
1. 재난	① 자연재난	발생건수	9	7	4	1	1	4.4	
		재산피해(백만원)	349	362	6	1	15	146.6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0
			부상	0	0	0	0	0	0
			계	0	0	0	0	0	0
	② 사회재난	발생건수	1	2	2	0	0	1	
		재산피해(백만원)	0	0	48	0	0	9.6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0
			부상	0	0	0	0	0	0
			계	0	0	0	0	0	0
2. 안전사고	① 대학안전 사고	발생건수	0	0	11	19	26	11.2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0
			부상	0	0	11	19	26	11.2
			계	0	0	11	19	26	11.2
	② 교육시설 안전사고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0
			부상	0	0	0	0	0	0
			계	0	0	0	0	0	0
	③ 연구실 사고	발생건수	0	0	1	2	2	1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0
			부상	0	0	1	2	2	1
			계	0	0	1	2	2	1
3. 감염병확산	① 코로나-19	감염자 수(코로나-19)	2	64	1,780	-	-	615.3	
		인명피해(사망)	0	0	0	-	-	0	
4. 범죄	① 일반범죄	발생건 수	0	0	0	0	0	0	
		피해자 수	0	0	0	0	0	0	
	② 성범죄	발생건 수	2	2	1	2	3	2	
		피해자 수	2	6	1	2	3	2.8	
5.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① 산업재해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0
			부상	0	0	0	0	0	0
			계	0	0	0	0	0	0
	② 중대재해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0
			부상	0	0	0	0	0	0
			계	0	0	0	0	0	0
6. 기타	① 비상사태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0
			부상	0	0	0	0	0	0
			계	0	0	0	0	0	0

붙임3

위험요인별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총괄)

위험유형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3	2024	2025	합계	
1. 재난	① 자연재난	교내 건물 방수공사	98	107	120	325
		교내 건물 보수공사	538	2,212	2,000	4,750
		조경시설물 보수공사	340	115	340	795
		계	976	2,434	2,460	5,870
	② 사회재난	소방보수 공사 비용	65	69	65	325
		소방설비 기능 점검	18	18	18	54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14	13	13	40
계	97	100	96	293		
2. 안전사고	① 안전사고	동행지도비	17	28	28	73
		계	17	28	28	73
	② 교육시설 안전사고	건물 외벽 보수공사	283	109	320	712
		교내 건물 보수공사	353	2,212	2,000	4,565
		계	636	2,321	2,320	5,277
	③ 연구실 사고	대학교비	46.5	40	40	126.5
		연구실안전관리비	70	70	70	210
계	116.5	110	110	336.5		
3. 감염병 확산	① 코로나-19	방역	10	5	5.5	20.5
		방역 물품 구입	-	-	-	-
		계	10	5	5.5	20.5
4. 범죄	① 일반범죄	-	-	-	-	
		계	-	-	-	
	② 성범죄	재발방지교육	2	1	1	4
		계	2	1	1	4
5.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① 산업재해	산업보건 위탁관리	4	4	4.8	12.8
		물품구입	5	5	5	5
		계	9	9	9.8	27.8
	② 중대재해	-	-	-	10	10
		계	-	-	10	10
6. 기타	① 비상사태	-	-	-	-	
		계	-	-	-	